

# 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 100% 달성 추진

-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대상 시설 확대 등 현장 맞춤 지원 방향 논의 -

**【관련 국정과제】 91-5.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고령화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금)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하였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이번 위원회에서는 ▲ 「2025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결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 ▲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 등을 보고하고,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사회복지 인력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준수율은 '21년 90.2%에서 '25년96.4%, '26년 98.2%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27년에는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국고지원시설 10종\* 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2개 시설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자활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노인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기관 총 10종

한편,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보수 수준 개선 및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의 적정 임금 기준, 직무·경력,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향후 예산 반영과 사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년 주기의 법정 실태조사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보수수준, 근로여건, 인권침해 실태 등을 파악하며, 조사결과는 향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을 보고하였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현장의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대체인력센터 설치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근로여건을 바꾸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처우개선위원회 개요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044-202-3270)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044-202-3276) 사무관 이태진 (044-202-3273)



## 붙임1 처우개선위원회 개요

### □ 처우개선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 (기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사항 및 적정 인건비 기준사항 심의
- (구성) <sup>(위원장)</sup> 보건복지부 제1차관 <sup>(위원)</sup>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시민단체의 추천,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 (시행령 제4조의 2), 관계공무원 등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 (시행령 제4조의 2)

### □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 임기: '24.12.6. ~ '26.12.5. (2년, 1회 연임)

구 분	소 속
위원장	보건복지부
전문가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사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민단체	한국치매가족협회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관계 공무원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 (배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방이양('05년) 이후 지역별 인건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 도입 : ('05년) 생활시설, ('09년)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복지관)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성격)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
- (적용 범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 국고지원)
  - \* 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은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닌 서비스 제공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 (적용 원칙) 사회복지시설 관할 지자체·국고지원시설 소관부서 등이 별도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재량 부여
- (내용 및 구성) 직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시간외, 가족, 명절)
  - 사회복지직은 지역·시설유형과 무관하게 단일 기본급 표로 구성
  - \* 이용시설의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은 별도 기본급 표를 적용
- (개정방법) 기본급 보수는 공무원 임금 인상을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공무원 보수 확정 後 가이드라인 확정(매년 1월경)